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38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386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1146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라병룡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성우, 이유영

변론 종결 2021. 4. 21.

판결 선고 2021. 5. 2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1146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44,048,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D 전 8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 5. 22. 접수 제218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4,048,8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원래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K 생)는 E(F 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피고와 딸 4명(G, H, I, J)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2. 1. 2.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9.경 퇴원하여 그 무렵부터

파주시 소재 자택에서 E과 생활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1)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 5. 12.자 농지계약서(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사자: 매수인 피고(갑), 매도인 원고(을)

대상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이천시 X 전 3㎡ 1) 매매 대금: 82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

- 2019. 5. 12. 계약금 230,000,000원 지급

- 잔금 590,000,000원은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갑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권리를 을이

소멸시키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을이 갑에게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2) 피고는 2019. 5. 12. 원고 명의 주식회사 R 계좌(계좌번호 S)(이하 '이 사건 R 계좌'라 한다)에 계약금 2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22.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같은 달 3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C조합으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R 계좌에 잔금 59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및 해제 등

1) 피고는 2019. 6. 30. 원고를 대리하여 V로부터 서울 양천구 T아파트 U호 아파트(64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V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0. 4.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7. G 등과 함께 V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억 원은 V가 몰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2, 15호증, 을 제42, 4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며,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한 무효의 등기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한 수용절차 내지 보상금 증액에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이에 필요한 문서로 알고, 표시상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부부는 피고 부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존부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내용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감도장의 날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갑 제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30. 피고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6. 2.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 된 점, ②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추정되는 원고의 인식 및 의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의 원고 인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 12호증, 을 제1, 3, 9, 38, 43, 54, 56, 57, 59, 74, 77, 79 내지 82,, 85, 87, 93, 98 내지 10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토지들에 관한 수용 내지 보상금 증액에 필요한 문서라고 원고를 속여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 착오의 계기인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천시장은 2019. 3. 26. 원고 소유 이천시 M 전 5773m², N 전 8968m², ○ 전 513m², P 전 4354m²을 포함(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한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을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해 4. 15.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15. 이천시 관련부서에 원고 명의로 "위 계획을 결사 반대하므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의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도시관리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위 도시관리계획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위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수용절차 내지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착오 아래 위 도시관리계획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경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피고 부부 주거지인 T에 집을 얻어 원고 부부를 모시고 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의 처인 Z은 2019. 4. 16. 원고가 T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알아보았고, 같은 해 5. 6.경 공인중개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았으며, 이후 V와의 협의를 거쳐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확정하되, 당시 V가 남편과 소송 중이어서 그 소송이 종결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 17억 원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약 2억 원과 LTV(Loan To Value ratio) 한도에 따른 예상 주택담보대출금 6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8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는 위 추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았으나, 원고 소유 토지는 대규모 농지여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용이하지 않았고, 당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토지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위 방법을 택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 소유 토지 중 가격이 위 추가자금액과 유사한³⁾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가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2019. 5. 12. 매매대금을 8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원고는 2019. 6. 27.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수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이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9. 6. 30. V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4) E은 2019. 7. 초경 G, H 등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 이름으로 집을 샀고, 원고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 AA와 통화를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부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도 위 과정을 모두 알고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의 인식 및 의사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2019. 4. 24. 본인 신청으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감증명서에는 매매대상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매수인을 피고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당시는 피고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향후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매도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2019. 5. 12. 원고가 거주하는 파주시 주택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 사용 용도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Y은 2019. 5. 22.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므로 미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기재하여 작성해 간 확인서면의 필적기재란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직접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A"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및 유일한 아들인 피고와의 특수한 애착·신뢰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장애는 운동능력이 제한된 신체적 장애일 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장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가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면에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어떠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R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820,000,000원을 사용했는데, 그중 ①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 221,650,000원, ② 원고 명의 계좌에 남은 잔액 154,301,139원, ③ V가 원고에게 반환할 중도금 1억 원을 공제한 344,048,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 31호증, 을 제65,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9. 5. 8.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R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R 계좌에 입금된 820,000,000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이 사건 토지 양도 및 기타 사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2019. 5. 18. 280,000원을 피부 화장품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물품구입대금, 신용카드대금 등 원고와 무관한 내용으로 소비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가 사용한 금액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 ⑥ 이 사건 R 계좌를 비롯한 원고 명의 계좌에 남은 금액, 원고가 V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은 모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을 맡기면서 이 사건 R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 부부는 향후 자신들의 자금으로 보충할 생각으로 위 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위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7억 원의 지불과 관련된 행위만을

위임하고 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외에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R 계좌에 입금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820,000,000원 중 ①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비용 221,650,000원, ② 이 사건 R 계좌를 포함한 원고 명의 계좌에 남은 잔고 154,301,139원, ③ V가 원고에게 반환할 중도금 1억 원 합계 475,951,139원을 공제한 나머지 344,048,861원(= 820,000,000원 ~ 475,951,139)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R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2019. 5. 29. 9,900,000원, 2019. 6. 15. 21,000,000원, 2019. 7. 26. 10,000,000원 합계 40,900,000원이 각 이체되고, 2019. 7. 10. E 명의의 AF은행 계좌(AH)로 9,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원고 부부가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의 합계인 49,900,000원은 부당이득반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2019. 5. 29. 9,900,000원, 2019. 6. 15. 21,000,000원 각 이체된 합계 30,900,000원은 Z이 2019. 6. 20. 출금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E 명의의 AF은행 계좌(AH)로 2019. 7. 10. 이체된 9,000,000원은 2019. 10. 7. E 명의의 AF은행 계좌(AI)로 이체되었다가 2019. 10. 8.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에게 최종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한편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R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이체된 10,000,000원은 이미 이를 공제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각 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44,048,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진술된 제1회 변론기일 다음날인 2021. 1. 28.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윤종구

판사권순형

- 1)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이천시 X 토지에 관하여는 말소등기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공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700원으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811,918,800원이고, 담보대출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의 2019. 5. 21. 기준 평가가격은 830,159,000원이며, 2019. 5. 31. 공시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6,900원으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822,099,6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가가 위 공시지거나 평가가격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9 내지 10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의 실제 거래가격 역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와 유사한 수준임이 인정된다.
- 4)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억 원 + 이 사건 토지 양도세 96,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9,620,000원 + 원고에게 부과된 기타 국세 15,830,000원
- 5) 이 사건 R 계좌 잔액 33,299,054원 + 원고 명의 R 계좌(AB) 잔액 6,000,000원 + 원고 명의 R 계좌(AC) 잔액 25,000,000원 + 원고 명의 R 계좌(AD) 잔액 50,000,000원 + 원고 명의 R 계좌(AE) 잔액 30,000,000원 + 원고 명의 AF은행 계좌(AG) 잔액 10,002,085원
- 6) 을 제6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납부한 세금액이 원고 주장과 다소 상이하나,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인정한다.
- 7) 원고는 2020.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서

위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변경신청서가 2021. 1. 27.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됨으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